#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17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전용기・이기헌・신정훈

이소영 • 전진숙 • 장철민

권칠승 · 문진석 · 황운하

한창민 의원(10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거와 달리 출산 환경이 바뀌어 많은 산모들이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출산 후 당연히 거치는 절차로 자리잡음. 그러나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함에 따라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임.

현행법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으나, 의무가 아닌 권고조항인데다지자체별 예산 여건의 차등으로 인해 24년 6월 현재 전국에 10여 곳을 겨우 넘는 수준임.

이에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, 설치 비용의 2/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17 및 제21조).

법률 제 호

#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7제1항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"를 "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"으로, "설치·운영"을 "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그 외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·운영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이내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행 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제15조의17(지방자치단체의 산후 조리원 설치) ① -----조리원 설치) ① 시·도지사 또 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 관할 --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체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--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 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 (이하 이 조에서 "공공산후조리 원"이라 한다)을 설치 · 운영할 ----- 설치·운영하 수 있다. 여야 하고, 그 외의 시장・군수 •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공공산 후조리원을 설치 • 운영---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국가는 제21조(경비의 보조) ① -----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 1. ~ 9. (생 략) 1. ~ 9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10. 제15조의17에 따른 공공산 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 비용의 3분의 2 이내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